

의안번호	2204023
의 퇴 인	김태년의원
회 답 일	2024.11.7
추계번호	24B389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조 1,190억원, 2030년 1조 3,895억원 등 향후 5년간 6조 2,964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급권자의 범위 (안 제5조제1항)	국비	9,356	10,043	10,552	11,075	11,617	52,644
	지방비	1,834	1,969	2,069	2,171	2,277	10,320
	합계	11,190	12,012	12,621	13,247	13,895	62,96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1항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함.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 으로 함 • (현행) 100분의 43 이상→ (개정안) 100분의 60 이상	의무규정
2	안 제7조의2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현행) 30세 미만→ (개정안) 34세 이하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제1항 (수급권자의 범위)	○	•(추계) 주거급여 수급권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임차급여비 추산
2	안 제7조의2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미대상) 2021년부터 실시중인 청년분리급여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사항 - 2024년 예산 169억 3,500만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확대함에 따라 임차급여 수급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개정안은 이를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제1항)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2024년 사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비용에서 현행 사업 수준(48%이하)에 따른 비용(기준선)을 차감하여 추산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주거급여 신청이 예상되는 가구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8~2023년)의 경상소득 48%, 60% 이하 가구 비중과 실적치의 기준중위소득과 경상소득간 차이를 조정계수로 적용하여 해당 가구수를 추정
 - 주거급여 중 소득기준에 해당 하는 가구의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수선 유지급여는 최근 5년간 급여대상자 기준 확대 등 대상가구의 증가에도 사

업비 확대¹⁾가 나타나지 않아, 개정안은 수선유지 급여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향후 자가급여비는 1,600억원 수준(2025년 예산안)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세대주가 아닌 34세 이하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세대주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2021년부터 청년분리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산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부모와 취업 또는 구직 등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미혼자녀(34세 이하)에게 청년분리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2024년 관련 사업비 169억 3,500만원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기준 완화(48%→60%)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급여비 추가소요액

□ 주거급여 수급기준 완화로 수급대상 확대가 예상되며, 임차급여비는 일반 임차급여비와 청년분리가구 임차급여를 구분하여 추계 후 합산함

- 임차급여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분리 가구를 구분하여 추계
 - 청년 분리 가구 수는 2024년 실적치(임차가구의 0.57%)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1) 주거급여 중 자가급여 수급대상 및 자가급여비(예산) 현황: 2017~2024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준 중위소득	43%	44%	45%	45%	46%	47%	48%
자가가구	74,158	86,055	91,786	103,464	111,966	109,860	106,427
(실수급가구)	17,488	22,264	17,635	20,321	20,410	20,000	20,000
수선유지급여비(억원)	1,035	1,777	1,511	1,511	1,247	1,246	1,248

주: 2024년 수선유지급여 가구수는 1~8월 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2]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 현황: 2018~2024년

(단위: 가구)

	2020	2021	2022	2023	2024
임차급여 수급가구	914,510	1,149,785	1,204,309	1,274,673	1,355,297 ¹
(청년분리가구)	-	3,826	6,101	7,060	7,618

주 1. 2024년 1~7월을 바탕으로 추정된 추정치(임차급여)

2. 수급가구 수는 각 연도별 1~12월까지 평균 수급가구, 청년분리가구 2024년은 1~7월 실적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 (임차가구 추정) 임차급여 수급가구 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현행 기준선 대상 가구(48% 이하)를 차감하여 추산하고, 청년분리가구를 합산하여 추산

- 본 추계에서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별 가구분포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및 60% 이하일 때 가구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
 - 기준 중위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가정하여 소득구간별 가구비중(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실적치의 기준중위소득과 경상소득간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추계기간 예상되는 가구수를 추정함
 - 개정안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수급률은 제도변화 초기 평균수급률 77.8%를 적용
 - 제도변화 차년도부터는 전년 대비 2.2% 자연증가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가정함²⁾
- 청년분리가구 수는 임차가구의 0.57%(2024년 임차가구 실적추정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임차급여 추가수급자 수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 제도변화가 없는 동일한 수급률(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 적용된(2016~2018년) 기간동안 홍보효과 등에 따라 매년 자연증가분이 발생하였으며(해당 기간 3년간), 평균 증가분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18년은 부양의무자 폐지전월까지 실적 적용). 이에 따라 제도변화 다음 년도부터 전년 수급자 수에 평균 2.2%p씩 자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형에 반영함

[표 3] 주거급여 임차급여 확대에 따른 추가수급대상 전망: 2026~2030년

(단위: 가구)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임차가구	435,113	448,528	452,548	456,111	459,419	2,251,719
추가청년분리가구	3,046	3,140	3,168	3,193	3,216	15,762

- (급여비 단가) 가구별 지급된 급여비 단가는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2025년 예산안 단가, 20.4만원)에 최근 3년간(2022~2024년 예산) 연평균 증가율(4.1%)을 반영하며, 임차급여 중 청년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비 단가는 2025년 청년급여비 단가(25.6만원)를 적용
- 임차급여 실적 단가(2024년 실적기준, 월): 일반 임차급여비 단가 19.2만원(월), 청년분리가구 단가 22.9만원
 - 임차급여비 단가 평균증가율(최근 3년간) 4.1%
 - － 청년임차급여 평균단가는 2025년 임차급여비 예산안 단가와의 차이(5.2만원)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가구별 임차급여비(월) 단가 전망: 2026~2030년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임차급여비(일반) 단가(월)	21.2	22.1	23.0	24.0	25.0
임차급여(청년분리 지급)단가(월)	26.4	27.3	28.2	29.2	30.2

- 주거급여 추가재정소요는 급여별 추가된 가구와 월평균 급여비 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추산
- 2025년도 예산안 기준 국비보조율 83.61%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이하까지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조 1,190억원, 2030년 1조 3,895억원 등 향후 5년간 6조 2,964억원으로 추계됨

[표 5]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주거급여 소득기준 완화	국비	9,356	10,043	10,552	11,075	11,617	52,644
	지방비	1,834	1,969	2,069	2,171	2,277	10,320
	합계	11,190	12,012	12,621	13,247	13,895	62,964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상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간주하여 추정한 가구수에 기준중위소득 분포와 주거급여 실적치 분포간의 차이를 조정계수로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로, 연도별 가구의 소득 수준,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고시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